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8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80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067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윤용섭, 이

다우, 정미희, 조규석, 황인용

피고, 상고인 W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노서령, 안병은, 이지훈,

이한나, 황적화

판 결 선 고 2022. 6. 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067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사실과 사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69,474,092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C의 보증채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 추정은 반복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2015. 10. 20.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 특허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식회사 M의 대위변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대위변제되어 질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은 할 수 없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허의 가액에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옳고, 이 사건 특허의 가치는 적어도 669,474,092원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또는 I 특허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여부, 수익자의 선의, 신의칙 위반, 가액배상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